



제422회 국회 (임시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국가안전보장 등 업무를 소관하는 기관 소속 공직자의
퇴직 후 해외취업 제한 근거 마련〉
■ 김영배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5864호)

2025. 2.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전문위원 조문상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개정안의 주요내용	2
2. 검토의견	7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김영배의원 등 11인
2. 발의연월일 : 2024. 11. 26.
3. 회부연월일 : 2024. 11. 27.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위 공직자에 한하여 퇴직공직자가 업무와의 밀접한 관련성 여부 확인 및 취업 승인을 거쳐 취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국가보안과 관련된 업무를 다루었던 일반 공직자가 해외 기업 및 기관에 제한 없이 취업할 경우 정보 인력에 대한 무분별한 유출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퇴직 전 5년간 소속된 기관이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에 관한 업무를 다루었던 모든 공직자가 밀접한 관련성이 없다는 확인 또는 취업 승인을 받아야 해외 기업 및 기관 취업을 가능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10항 등).

Ⅲ. 검토의견

1. 개정안의 주요내용

개정안은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기관의 업무가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에 관한 업무인 경우 해당 퇴직공직자는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없다는 확인을 받거나 취업 승인을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외 기관이나 해외 기업에 취업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10항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17조(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① (생략)	제17조(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 단서의 밀접한 관련성의 범위는 취업심사대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인 경우를 말한다.	② -----단서 및 제10항 단서----- ----- ----- ----- ----- --.
1. ~ 8. (생략)	1. ~ 8. (현행과 같음)
③ ~ ⑨ (생략)	③ ~ ⑨ (현행과 같음)
<신설>	⑩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기관의 업무가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에 관한 업무인 모든 퇴직 공직자는 해외기관

현행	개정안
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 당시 소속되었던 기관의 장을 거쳐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취업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생략) 제19조(취업자의 해임 요구 등) ①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가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인에 대한 취업해제조치를 하도록 요청하여야 하며, 요청을 받은 국가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인이 취업하고 있는 취업심사대상기관의 장에게 해당인의 해임을 요구하여야 한다. 1. (생략) 2. 제1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취업승인을 받고 취업한 사람이 제18조의2제1항을 위반(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업무취급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제18조의4제1항을 위반한 경우 ② (생략) ③ 제1항에 따른 해임 요구에 대하여 「행정소송법」 제3조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그	----- ----- ----- ----- -----. ③ (현행과 같음) 제19조(취업자의 해임 요구 등) ① - ----- ----- ----- ----- ----- ----- ----- ----- -----. 1. (현행과 같음) 2. ---<u>단서 및 같은 조 제10항 단서</u>----- ----- ----- ----- ----- ② (현행과 같음) ③ ----- ----- -----

현행	개정안
소송이 제기된 때부터 법원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제17조제1항에 따른 해당인의 취업제한 기간의 진행이 정지된다. 다만, 해당소송을 통하여 해임 요구 처분이 취소되거나 해임 요구 처분의 효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0조의2(국회 등에 대한 보고) 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또는 해당 지방의회 2차 정례회 개최 전까지 전년도 의 재산등록, 주식의 매각 또는 신탁, 선물신고,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실태(제1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취업승인을 하거나 제18조제3항에 따른 심사 결과 취업할 수 있다고 통지하는 때에는 그 결과를 포함한다)와 감독, 그 밖에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29조(취업제한, 업무취급 제한 및 행위제한 위반의 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17조제1항 및 같은 조 제10항----- -----. ----- ----- ----- -----. 제20조의2(국회 등에 대한 보고) ① ----- ----- ----- ----- ----- -----단서 및 같은 조 제10항 단서----- ----- ----- ----- ----- -----. ② (현행과 같음) 제29조(취업제한, 업무취급 제한 및 행위제한 위반의 죄) ----- ----- ----- -----.

현행	개정안
1. 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 취업승인을 받지 않고 밀접한 업무관련성이 있는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취업한 사람	1. 제17조제1항 및 같은 조 제10항 ----- ----- -----

2. 검토의견

현행법 제17조는¹⁾ 일정한 범위의 공직자 등(취업심사대상자)은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없다는 확인을 받거나 취업승인을 받은

1) 「공직자윤리법」

제17조(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①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와 부당한 영향력 행사 가능성 및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의 직원(이하 이 장에서 “취업심사대상자”라 한다)은 퇴직일부터 3년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하 “취업심사대상기관”이라 한다)에 취업할 수 없다. 다만,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취업심사대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취업심사대상기관 간에 밀접한 관련성이 없다는 확인을 받거나 취업승인을 받은 때에는 취업할 수 있다.

1. 자본금과 연간 외형거래액(「부가가치세법」 제29조에 따른 공급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일정 규모 이상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
2. 제1호에 따른 사기업체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
3. 연간 외형거래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변호사법」 제40조에 따른 법무법인, 같은 법 제58조의2에 따른 법무법인(유한), 같은 법 제58조의18에 따른 법무조합, 같은 법 제89조의6제3항에 따른 법률사무소(이하 “법무법인등”이라 한다)
4. 연간 외형거래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공인회계사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회계법인
5. 연간 외형거래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세무사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세무법인
6. 연간 외형거래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외국법자문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및 같은 조 제9호에 따른 합작법무법인
7.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제1호가목에 따른 시장형 공기업
8. 안전 감독 업무, 인·허가 규제 업무 또는 조달 업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공직유관단체
9.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 및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를 설립·경영하는 학교법인과 학교법인이 설립·경영하는 사립학교. 다만, 취업심사대상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원으로 취업하는 경우 해당 학교법인 또는 학교는 제외한다.
10. 「의료법」 제3조의3에 따른 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을 개설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 가. 「의료법」 제3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의료법인
 - 나. 「의료법」 제33조제2항제4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11. 기본재산이 일정 규모 이상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 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 나.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가목 외의 비영리법인
1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기업체 또는 법인·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기업체 또는 법인·단체
 - 가. 방위산업분야의 사기업체 또는 법인·단체
 - 나. 식품 등 국민안전에 관련된 인증·검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기업체 또는 법인·단체

②~⑨ (생략)

때를 제외하고는 퇴직일부터 3년간 일정한 범위의 민간 사기업체나 법인·단체 등(취업심사대상기관)에 취업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²⁾

취업제한 제도의 적용 대상이 되는 취업심사대상자는 법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12호까지³⁾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와 부당한 영향력 행사 가능성 및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2) 취업승인을 받지 않고 밀접한 업무관련성이 있는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취업한 사람은 법 제29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3) 「공직자윤리법」

제3조(등록의무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이하 “등록의무자”라 한다)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을 등록하여야 한다.

1. 대통령 · 국무총리 · 국무위원 · 국회의원 등 국가의 정무직공무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의원 등 지방자치단체의 정무직공무원
3. 4급 이상의 일반직 국가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 및 지방공무원과 이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무공무원과 4급 이상의 국가정보원 직원 및 대통령경호처 경호공무원
5. 법관 및 검사
6.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7. 대령 이상의 장교 및 이에 상당하는 군무원
8. 교육공무원 중 총장 · 부총장 · 대학원장 · 학장(대학교의 학장을 포함한다) 및 전문대학의 장과 대학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장, 특별시 · 광역시 · 특별자치시 · 도 · 특별자치도의 교육감 및 교육장
9. 총경(자치총경을 포함한다) 이상의 경찰공무원과 소방정 이상의 소방공무원
10. 제3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9호의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위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 임용된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 및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
1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이하 “공기업”이라 한다)의 장 · 부기관장 · 상임이사 및 상임감사, 한국은행의 총재 · 부총재 · 감사 및 금융통화위원회의 추천직 위원, 금융감독원의 원장 · 부원장 · 부원장보 및 감사, 농업협동조합중앙회 ·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회장 및 상임감사
12.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이하 “공직유관단체”라 한다)의 임원
- 12의2.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부동산 관련 업무나 정보를 취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직유관단체의 직원. 다만, 청소원, 건물 관리원 및 직업운동선수 등 부동산 관련 정보를 취득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직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은 제외한다.
13. 그 밖에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 분야의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의 직원

② (생략)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 및 공직유관단체의 직원으로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무직 공무원, 4급 이상 공무원(일부 특정분야 공무원의 경우 5급 이하 7급 이상), 법관·검사, 헌법연구관, 대령 이상의 장교, 대학교 총장 등 및 교육감·교육장, 총경 이상의 경찰공무원, 소방정 이상의 소방공무원, 공기업의 장·부기관장 등, 공직유관단체의 임원 등임.

취업심사대상자의 취업이 제한되는 취업심사대상기관은 자본금과 연간 외형거래액(「부가가치세법」 제29조에 따른 공급가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그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 포함), 연간 외형거래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법무법인·회계법인·세무법인·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등을 비롯하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장형 공기업, 안전 감독 업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공직유관단체, 학교법인 및 학교법인이 설립·경영하는 사립학교, 종합병원 및 그 설립 법인, 기본재산이 일정 규모 이상인 사회복지법인, 방위산업 분야의 사기업체나 법인·단체 또는 식품 등 국민안전에 관련된 인증·검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기업체나 법인·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기업체나 법인·단체 등임.

개정안은 퇴직 전 5년간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에 관한 업무를 소관하는 기관에 소속하였던 공직자의 해외취업 제한 제도를

신설하려는 것으로, 이들 공직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해외 기관 또는 해외 기업에 취업할 수 없도록 하되,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취업하고자 하는 해외 기관 또는 해외 기업 간에 밀접한 업무관련성이 없다는 확인을 받거나 취업 승인을 받은 때에 한하여 취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임.

제안 이유에 따르면, 국가보안과 관련된 업무를 다루었던 공직자가 해외 기관이나 해외 기업에 제한 없이 취업할 경우 정보 인력에 대한 무분별한 유출이 우려된다고 밝히고 있는 바,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직무상 비밀 엄수 의무, 「형법」에 따른 공무상 비밀누설죄, 「군사기밀 보호법」에 따른 군사기밀 누설 금지 등 관련 법률에 유사한 목적으로 규제적 장치들이 마련되어 있으나,⁴⁾

4) 「국가공무원법」

제60조(비밀 엄수의 의무) 공무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嚴守)하여야 한다.

「형법」

제127조(공무상 비밀의 누설)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군사기밀 보호법」

제13조(업무상 군사기밀 누설) ① 업무상 군사기밀을 취급하는 사람 또는 취급하였던 사람이 그 업무상 알게 되거나 점유한 군사기밀을 타인에게 누설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람 외의 사람이 업무상 알게 되거나 점유한 군사기밀을 타인에게 누설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15조(외국 또는 외국인을 위한 죄에 관한 가중처벌) 외국 또는 외국인(외국단체를 포함한다)을 위하여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에 규정된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해당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한다

「국가정보원직원법」

제17조(비밀의 엄수) ① 직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한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⑥ (생략)

제32조(벌칙) 제17조를 위반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에 관한 국가기밀 등 중요 정보가 해외로 유출되는 것을 실효성있게 방지하기 위한 사전적·예방적 수단으로 국가안전보장 등 특정 분야에서 재직하였던 공직자의 해외취업을 제한하는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으로 이해됨.

공직자 등이 퇴직 후 취업한 해외 기관 또는 해외 기업에 국가기밀 등 국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업무상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도 공직윤리상 부적절한 행위로 볼 여지가 있는 점,⁵⁾ 국가안전보장 등 특정 분야에서 관련 업무를 다루었던 퇴직공직자의 해외 취업을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제22조(비밀엄수 의무 등) ① 공무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이 법과 관련된 직무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공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③ (생 략)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제19조(비밀 유지의 의무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해당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해서는 아니 된다.

1. 대상기관의 임직원(교수·연구원 및 학생 등 관계자를 포함한다)
2. 제6조에 따라 방위산업기술 보호에 관한 심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3. 제9조제1항에 따라 방위산업기술의 수출 및 국내이전 등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4. 제11조에 따라 유출 및 침해행위의 신고접수 및 방지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5. 제12조에 따라 방위산업기술 보호체계의 구축·운영에 대한 실태조사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제20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제7조에 따라 방위산업기술의 지정·변경 및 해제 업무를 수행하는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
2. 제12조에 따른 실태조사 등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제21조(벌칙) ① 방위산업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 제10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0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0조제3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제19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도용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⑦ (생 략)

- 5) 정보 제공의 대가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 뿐 아니라 공직에 재직하는 동안 취득한 국가기밀 등 중요 정보를 유출하는 행위 자체도 공직윤리상 부적절한 행위로 볼 여지가 있음.

제한하는 제도가 국가기밀 등 국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 정보의 해외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개정안의 입법 취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봄.

다만, 개정안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국가안전보장 등 특정 분야 퇴직공직자의 해외취업 제한이 현행법상 취업제한 제도의 목적 및 취지와 다르다는 점을 감안하여 해외취업 제한 제도 도입의 목적 및 취지에 부합하도록 업무관련성의 기준을 별도로 마련하는 등 입법적 보완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봄.

현행법상 취업제한 제도는 공직자 등이 퇴직 후 민간 사기업체나 법인·단체 등에 취업을 목적으로 재직 중 특혜를 부여하거나 취업한 민간 사기업체나 법인·단체 등을 위해 퇴직 이후에 퇴직 전 소속기관에 대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율하기 위한 제도로 설계되어 있는 반면, 개정안에 따른 해외취업 제한 제도는 국가기밀 등 국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업무상 정보의 해외 유출 방지에 초점을 두고 있음.

그런데, 개정안은 안 제17조제10항 단서에 따른 특정 분야 퇴직공직자의 해외취업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업무관련성의 기준을 현행법 제17조제2항 각 호6)에 따르도록 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조금·장

려금·조성금 등을 배정·지급하는 등 재정보조를 제공하는 업무”에 해당하는지 등 현행법상의 일반적인 취업제한 제도와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퇴직 후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취업을 목적으로 재직 중 특혜를 부여한다거나 또는 취업한 취업심사대상기관을 위해 퇴직 이후에 퇴직 전 소속기관에 대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를 방지하려는 현행 취업제한 제도와 달리, 국가안전보장 등 특정 분야에 재직하였던 공직자가 해외 기관 등에 취업하여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에 관하여 취급하였던 국가기밀 등 국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업무상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자체를 부적절한 것으로 보아 규제하려는 것이 개정안의 주된 입법 취지라고 본다면,

취업가능 여부를 결정하는 업무관련성의 판단 기준을 현행법상의 일반적인 취업제한 제도와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타당성이 결여된

6) 「공직자윤리법」

제17조(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① (생략)

② 제1항 단서의 밀접한 관련성의 범위는 취업심사대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인 경우를 말한다.

1.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조금·장려금·조성금 등을 배정·지급하는 등 재정보조를 제공하는 업무
2. 인가·허가·면허·특허·승인 등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3. 생산방식·규격·경리 등에 대한 검사·감사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4. 조세의 조사·부과·징수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5. 공사, 용역 또는 물품구입의 계약·검사·검수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6. 법령에 근거하여 직접 감독하는 업무
7. 취업심사대상기관이 당사자이거나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건의 수사 및 심리·심판과 관계되는 업무
8. 그 밖에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③~⑨ (생략)

것으로 보임.

개정안에 따른 국가안전보장 등 특정 분야 퇴직공직자의 해외취업 제한 제도는 그 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퇴직공직자가 재직 시 취급하였던 정보의 내용이나 기밀성 또는 중요도, 접근 권한의 수준, 정보 취급 업무의 내용이나 방식 등을 밀접한 업무관련성 판단의 기준으로 설정하는 것이 합리적인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아울러, 개정안은 안 제1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제10항 단서”를 추가하여 안 제17조제10항 단서에 따른 밀접한 관련성의 범위를 제17조제2항 각 호의 요건에 따라 판단하도록 하고 있으나, 안 제17조제10항에서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라고 규정하여 제17조제2항의 적용을 배제하여 해석상 모순되는 것으로 보임.

이와 같은 법체계상의 문제는 국가안전보장 등 특정 분야 퇴직공직자 해외취업 제한 제도를 현행 취업제한 제도의 틀 안에서 함께 규율하려는 데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보이는 바, 개정안에 따른 해외취업 제한 제도가 현행법상의 일반적인 취업제한 제도와 그 목적과 취지를 달리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그 적용 대상자, 취업이 제한되는 기관 또는 법인·단체의 범위, 업무관련성 판단 요건 등 제반 사항을 별도의 법체계로 규율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봄.

둘째,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률로서 개정안의 내용이 명확

성의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 등 기본권 제한의 원칙을 준수하고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음.

개정안은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기관의 업무가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에 관한 업무인 경우 원칙적으로 해외 기관 또는 해외 기업에 취업할 수 없도록 하되,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해외 기관 또는 해외 기업 간에 밀접한 관련성이 없다는 확인을 받거나 취업 승인을 받은 때에 한하여 취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개정안은 당사자가 소속하였던 기관의 업무가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에 관한 업무인지,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퇴직 후 취업하려는 해외 기관 또는 해외 기업 간에 업무상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취업 기회를 제한하는 제도를 신설하고 있다는 점에서 헌법 제15조에 따른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률에 해당함.

직업선택의 자유 등 헌법상의 기본권도 법률로 제한될 수 있으나, 헌법 제37조제2항7)에 따라 과잉금지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헌법 재판소는 법치국가원리의 한 표현인 명확성의 원칙은 기본적으로 모

7) 「대한민국헌법」

제37조 ①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②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든 기본권 제한 입법에 대하여 요구된다고 판시하였는 바,⁸⁾ 개정안에 대해서는 이같은 측면에서 검토할 부분이 있다고 봄.

개정안에 따른 해외 취업제한 제도의 적용 대상자인 퇴직공직자의 범위를 결정하는 요건인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은 「정부조직법」에 따른 사무 분장에 따라 기관 차원에서 일부 행정부처를 특정할 수 있으나, “국가안전보장”이라는 개념이 포괄적으로 해석될 수 있고, 각 행정부처 소관 사무와 관련하여 남북교류협력이나 외국 정부, 민간 기업이나 법인·단체와의 교섭 등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개정안의 적용 대상이 되는지 모호하다는 지적이 제기될 여지가 있음.

퇴직공직자의 취업이 제한되는 해외 기관 또는 해외 기업의 범위도 예측가능하도록 구체화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 바, 개정안에 따른 해외 기관 또는 해외 기업이라는 개념이 외국에만 거소를 두고 있는 법인이나 단체, 기관에 한정된 것인지, 조직이나 경영, 지배구조 또는 회계상 일정한 관계가 인정되면 국내 지사나 영업소 등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인지 그 범위가 불분명한 측면이 있음.

한편, 개정안은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기관”이라는 요건을 두

8) [헌법재판소, 2000헌가8, 2002.1.31.]

“법치국가의 한 표현인 명확성의 원칙은 기본적으로 모든 기본권 제한 입법에 대하여 요구된다. 규범이 의미내용으로부터 무엇이 금지되는 행위이고 무엇이 허용되는 행위인지를 수범자가 알 수 없다면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은 확보될 수 없게 될 것이고, 또한 법집행당국에 의한 자의적 집행을 가능하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어 일부 적용 대상을 한정하고,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밀접한 업무관련성이 없다는 확인을 받거나 취업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취업이 가능하도록 하여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해외 취업을 할 수 있는 여지를 두고 있으나,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기관의 업무가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에 관한 업무인 모든 퇴직공직자”를 직급 등에 상관 없이 일률적으로 적용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나 기관의 업무를 이유로 기간에 제한 없이 영구적으로 해외 기관 또는 해외 기업에의 취업을 허용하지 않고 있으며, 취업이 제한되는 해외 기관 또는 해외 기업의 범위도 그 유형이나 업종, 규모 등에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규제 대상으로 삼고 있음.

적용 대상 공직자의 범위와 취업이 제한되는 해외 기관 또는 해외 기업의 범위가 현행 취업제한 제도에 따른 취업심사대상자 및 취업심사대상기관의 범위를 규율하고 있는 요건에 비하여 포괄적이고 일률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측면이 있다는 점에서 과도한 기본권 제한에 해당한다는 비판이 제기될 소지가 있다고 보이는 바, 특별한 취업제한 제도로써 목적의 타당성이나 일정한 범위에서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을 갖추었는지 논의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셋째, 해외 기관 또는 해외 기업을 규제 대상으로 실효성 있는 법

적용을 통하여 입법 목적의 달성이 가능한지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음.

개정안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국가안전보장 등 특정 분야 퇴직공직자 해외취업 제한 제도의 규제 대상이 되는 해외 기관 또는 해외 기업에는 국내 지사나 영업소가 존재하지 않고 외국에만 거소(居所)를 두고 있는 외국 기관, 외국 법인 그 밖의 단체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음.

그런데, 법은 원칙적으로 속인주의 또는 속지주의에 따라 적용되는 점을 감안할 때, 외국에만 거소를 두고 있는 해외 기관 또는 해외 기업에 대해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 임의취업자에 대한 해임요구, 과태료 부과 등의 규정을 실효적으로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고, 해외 기관 또는 해외 기업이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도록 강제하는 것 뿐만 아니라 퇴직공직자의 재취업 여부를 파악하는 것 자체도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임.

이같은 점을 감안할 때, 해외 기관 또는 해외 기업을 규제 대상으로 하고 있는 해외취업 제한 제도는 실효성 있는 법 적용을 통한 목적 달성이 곤란할 수 있는 바, 개정안의 입법적 실익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인사혁신처는 국가안보에 관련된 정보의 유출을 방지하는 것은 필

요하나,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공직자윤리법」상 취업제한은 재직 중 재취업을 목적으로 한 민관유착과 퇴직공직자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방지를 위한 것으로 국가안보에 관련된 정보의 유출 방지와 그 제도상의 목적과 취지가 달라 「공직자윤리법」에서 국가안전보장 등 업무 소관기관에 소속하였던 공직자의 해외취업 제한을 규율하는 것은 어려운 측면이 있고, 「국가공무원법」⁹⁾ 뿐만 아니라 「국가정보원직원법」 등 관련 개별법에서도 퇴직자의 비밀누설 금지¹⁰⁾를 규정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으며,

현행법은 퇴직공직자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등을 방지하면서도 퇴직공직자의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도록 필요최소한의 범위에서 취업심사대상자 및 취업심사대상기관을 정하고 있는 반면, 개정안은 취업심사대상자를 정함에 있어 ‘국가안전보장’이라는 다소 추상적인 개념을 사용하고 있고 공직자의 직급·업무범위,

9) 「국가공무원법」

제60조(비밀 엄수의 의무) 공무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嚴守)하여야 한다.

10) 「국가정보원직원법」

제17조(비밀의 엄수) ① 직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한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2조(벌칙) 제17조를 위반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군무원인사법」

제17조(비밀 엄수 의무) 군무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재직 중이나 퇴직 후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제22조(비밀엄수 의무 등) ① 공무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이 법과 관련된 직무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공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정보 접근가능성 및 퇴직 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 등을 고려하지 않고 해당 기관에 근무했던 모든 공직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취업심사대상기관 또한 기업의 유형이나 규모 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모든 해외 기업 등으로의 취업을 제한하고 있는 바,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고,

아울러, 국내 기업과 달리 퇴직공직자가 해외 기업 등에 임의취업시 취업 여부의 확인이 곤란하며, 해외기업 등에 자료제출 및 해임 요구, 과태료 부과 등이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등 해외 기업 등에 대한 취업심사 및 위반시 제재조치 적용에 한계가 있어 입법적 실효성이 담보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국가정보원은 개정안의 경우 취업심사대상자의 직급 및 직무, 취업심사대상기관의 범위, 취업 제한의 기간을 정하지 않고 해외 기관 및 해외 기업 전체에 대한 취업을 제한하고 있는 바, 기본권 제한 입법에서 요구되는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는 것으로 보이고, 직업선택의 자유 및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법무부는 국가 안보 관련 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해외 기업 등으로의 취업을 제한하는 것은 「공직자윤리법」상 취업제한제도와 그 취지가 다르며, 취업제한제도와는 달리 퇴직공직자의 직급이나 취업하려는 해외 기업의 규모 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취업을 제한하는 것은 형평에 위배될 소지가 있고, 정보 유출을 방지하면서도 덜

침익적인 수단에 대한 검토 없이 해외 취업을 전면 제한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 위반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문 의 처
02)6788-5342